

제 315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전화 75-7834

1972. 11. 16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444. 6090

시보

차례

◎ 공 고

제 254 호	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영요강제정	3
제 255 호	7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집행요령.....	8

◎ 사 령..... 8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공 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
운용요강을 별첨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.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54 호

1972. 11. 14.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
재정자금운용요강 제정

서울특별시 장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운용요강

제 1 조 (목적) 이 요강은 서울특별시
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자금(이하
자금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관
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
로 한다.

제 2 조 (재원) 이 요강에 의한 지원
재원은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 의한
대하금과 그 회수자금을 재원으로
한다.

제 3 조 (용자대상 및 집행절차) ①중
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
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 농장등록을
필하고.

②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
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하되,

③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
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생산자 및
동법시행령 제 4 조 (업종분류)별표의
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생산
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
용자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④광업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
을 경영하는 자는 이 요강에 의한
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집행
요령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.

제 4 조 (자금의 구분) 이 요강에 의
한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
한다.

제 5 조 (용자조건) 이 자금의 용자조
건은 다음과 같다.

①시 설 자 금

1. 대출한도 20,000,000 원이내

2. 금 리 연리 10%

3. 용자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용
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부
재정자금에 의한 시설자금의 예에
준한다.

②운 전 자 금

1. 대출한도 10,000,000 원이내

2. 금 리 연리 15.5%

3. 용자기간 단기 : 1년 이내
중성기 : 3년 이내로

하되 용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
정부재정자금에 의한 운전자금의 예
에 준한다.

제 6 조 (대상업체의 선정) ①서울특별
시장은 (이하 시장이라 한다) 자금
의 사정을 참작하여 용자대상업체를
선정하고 자금의 지원한도를 결정한
후 이를 대출기관에 통보한다.
②시장은 용자대상업체의 수용포기 수
용태세 불비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
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적격업
체중에서 용자대상후보 업체를 선정
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자금대출) ①자금의 대출기관은
중소기업은행 (이하 은행이라 한다)
으로 한다.
②은행장은 시장이 선정 통보한 업
체에 대하여 최단시일내에 자금을
대출하여야 한다.
③대출절차는 은행의 정하는 바에
의하되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
야 한다.

제 8 조 (자금의 대하) ①시장은 대출
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대하한다.
②대하금리는 다음과 같다.
1. 시설자금 년리 8 %
2. 운전자금 년리 12 %
③대하기 간은 대하할 때 시장이 정
하는 바에 의한다.
④시장이 자금을 대하고자 할 때에는
은행장에게 대하의 뜻을 통보하고 이
에 의하여 은행장은 별지 1 호서식의

자금대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
신청서에 의거 자금을 지출한 후 별
지 2 호서식의 " 자금대하금 차용증서 " 를
교부받는다.

⑤대하된 자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은
은행이 부담한다.
⑥기타 대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
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 조 (자금의 회전대출) 대출에 의하
여 회수된 자금은 대하기 간내에 한하
여 그 자금의 범위내에서 회전 대출
할 수 있다.

제 10 조 (보고) 은행장은 매월 자금운
용상황 보고서를 익월 10 일까지 시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변경의 승인) 자금대출업체가
그 업체의 명의 대표자 및 소재지
기타 기업운영내용에 관한 변경이
있을 때에는 사전에 은행장의 의견
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
야 한다.

제 12 조 (사후관리) ①시장 및 은행장
은 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
때는 수용업체에 대하여 수시 실태
조사 및 서류 기타 보고서를 징구
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정부중소기업육성 제정 자금의
예에 의한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하
여 기업가동 및 기타 필요한 사항
을 파악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부실업체에 대한 조치) ①용
자 신청업체가 신청내용과 사실이 상

이하거나 사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중지한다.

(2)기대출된 업체가 전 1항의 사실이 있거나 신청시의 계획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대출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당초에 소급하여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.

(3)대출업체가 전제 11조의 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제 12 조 제 1항의 사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에는 자금의 회수는 물론 차후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자금대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기타사항) 본 업무수행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이 요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부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의 예와 이 사업목적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운영한다.

부 칙

1. 이 요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요강 시행이전에 기회 대하 대출된 자금은 이 요강에 의하여 대하 대출된 것으로 본다.
3. 이 요강 시행 이전에 시달한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차금 운용요강은 이를 폐지한다.

[제 1 호서식]

재 정 자 금 대 하 신 청 서

1. 대 하 신 청 금 액

일 금

원 정

2. 대 하 조 건

- 가. 대 하 기 간
- 나. 대 하 금 리
- 다. 대 출 금 리
- 라. 자 금 용 도
- 마. 이 자 지 불 방 법
- 바. 대 출 방 법
- 사. 기 타

이상과 같이 19 년 도 서울특별시 재정 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차금 원정을 용자금으로 대출코저 신청하오니 대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신 청 자 중소기업은행장

㉠

시 울 특 별 시 장 귀 하

[제 2 호 서 식]

재 정 자 금 대 하 금 차 용 증 서

1. 대 하 금 액

일 금

원 정

2. 자 금 구 분

3. 대 하 기 간

4. 이 자 율

대 하 금 리

년

분

대 출 금 리

년

분

5. 상 환 조 건

6. 기 타

위 금액을 그 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서 차용
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것을 약속합
니다.

19

년

월

일

차용인

중소기업은행장

인

서울특별시장 귀하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5 호

72년도서울특별시중소기업
육성재정자금 집행요령

7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
재정자금 집행요령을 서울특별시 중
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제3조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공고한다.

1972.11.14.

서울특별시장

1. 재 원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,
회수자금 및 신규대하 예정자금

2. 지원 대상

가.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
소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
을 필한 업체중

나.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
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한다.

다만,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
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
산자 및 동법 시행령 제4조(업
종분류)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
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조합
가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.

다. 광업, 운송업 및 상역 기타 써
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.

3. 자금의 용도

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
4. 지원내용

가. 운전자금

지원한도 : 5,000,000 원 이내

금 리 : 년 15.5 %

융자기간 : 3년 (6개월거치 2년
6개월 분할 상환)

나. 시설자금

지원한도 : 6,000,000 원 이내

금 리 : 년 10 %

융자기간 : 5년 (1년거치 4년
반기별 분할상환)

5. 신청서류

신청서 (산업국 공업과에서 배부)
및 관계 증빙서류 1부.

6. 신청기간

72. 11. 15 - 72. 11. 27 까지

7. 신청할 곳

당시 시민과

8. 지원대상 결정

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재정 자금
융자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
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중
소기업은행장 및 당해 업체에 통보한
다.

9. 기타 상세한 것은 산업국 공업과
(75-184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 령

◎ 1972. 11. 16.

남부병원 고용원(운전원) 김 성 실
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
서울특별시장